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청약 요건 확인

- ※ 본 안내문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청약안내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 관련 법령 개정 및 편집과정의 오류 등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함.(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허용.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추천기관

구분	기관
장애인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